

의안번호	제893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일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93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의자 : 이동우, 이상식, 김종필,
김현문, 박지현, 이상정,
이양섭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지원사업에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첨부제외 사유서
- 협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례안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업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복지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u>없는 한</u>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없을 때에는</u> -----</p>
<p>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 설></u></p> <p>6. (생략)</p>	<p>제6조(지원 사업)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업</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신 설>

제6조의2(복지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유

- 본 개정안은 안 제6조의2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이 요구되지만, 본 조항은 권고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실제 지급을 위한 대상의 구체적 범위,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이에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